삼정 KPMG

누버거버먼자산운용 주식회사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 검 토 보 고 서

제 6(당)반기말 2024 년 6 월 30 일 현재

삼 정 회 계 법 인

# 목 차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 ----------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 2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 3

삼정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06236
전화 (02) 2112 0100
팩스 (02) 2112 0101
www.kr.kpmg.com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검토보고서

누버거버먼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4 년 8 월 9 일

우리는 별첨 누버거버먼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2024 년 6 월 30 일 현재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정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해당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등 검토지침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가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해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삼 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교 태

이 검토보고서는 검토보고서일(2024 년 8 월 9 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검토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

제 6 기(당)반기말 2024 년 6 월 30 일 현재

누버거버먼자산운용 주식회사 (단위: 천원)

| 구 분 | 제 6(당)반기말 |
|---|---|
| 1. 자기자본 | 2,723,464 |
| 2. 최소영업자본액(A=Aa+ Ab+ Ac) | 1,060,901 |
| 필요유지자기자본(Aa) | 1,050,000 |
|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Ab) | 10,901 |
|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Ac) | - |
| 3. 최소영업자본액 2(B=Aa+ (Ab+ Ac)*50%) | 1,055,450 |

별첨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참조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에 대한 주석

제 6(당)반기말 2024 년 6 월 30 일 현재

누버거버먼자산운용 주식회사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대한 작성지침

(1)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금융투자업 규정상 2 종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 3-24 조의 3 에 의하여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최소영업자본액에 의한 적기 시정조치

금융투자업규정 제 3-26 조, 제 3-27 조, 제 3-28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기자본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적기시정조치 기준 |
|---|---|
| 경영개선권고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 |
| 경영개선요구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2(*)에 미달 |
| 경영개선명령 |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 |

(*) 필요유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의 합계액

2. 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

최소영업자본액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필요유지자기자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3 조제 1 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
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
다.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

회사의 당기말 현재 최소영업자본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 | | 제 6(당)반기말 |
|---|---|---|---|---|
| 최소영업자본액(A=Aa+ Ab+ Ac) | | | | 1,055,450 |
| 필요유지자기자본(Aa) | | | | 1,050,000 |
|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Ab) | | | | 10,901 |
| | 집합투자재산 | | 증권집합투자기구 | 10,901 |
| | | | 기타 집합투자기구 | - |
| | 투자일임재산 | | | - |
|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Ac) | | | | - |
| | 증권 | 지분증권 | 해외현지법인 지분 | - |
| | | | 관계회사투자지분 | - |
| | | |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 - |
| | | 채무증권 |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 |
| | |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AA+ 인 경우 | - |
| | | | 그외의 경우 | - |
| | | 집합투자증권 | 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 |
| | | |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 - |
| | | 기타 증권 | | - |
| | 파생상품 | | | - |
| | 대출채권 | | | - |